대학혁신지원사업(22-24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

제정

I 기본 원칙

○ **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**을 제외한 항목은 **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**에서 각 대학에서 **자율적**으로 수립한 **사업계획**에 따라 집행

○ 사업수행과정에서 적용되는 **상위법령** 및 **지침***, **학칙 준수**

○ 사업비는 **대학(교비)회계에 별도 계정(계좌) 설치**하여 **중앙관리**

○ 회계연도는 **매년도 3월 1일**부터 **다음 연도 2월 말일**까지

○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**관계법령** 및 **기본계획, 동 기준**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**대학 자체 지침**에 따름

○ 집행은 **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**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, **증빙서류**(전자문서 형태 가능)는 **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**

○ 당해연도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, 필요시 **사업비의 10% 범위 내**에서 **재단**의 **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** 가능

○ 매 사업연도 **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** 사업비 **사용실적보고서(정산보고서)**를 **제출**

○ **사업계획** 및 **집행계획 변경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**(대학 자체 심의기구) **심의** 후 변경 가능하며, **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**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**대학혁신**운영위원회에 **사후보고** 가능

○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**사업기간 중 대학 자체 심의(예산편성) 절차를 거쳐**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되,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**종료 시 국고반납**

○ **사업비 부당 사용**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**회수, 삭감 등**이 가능하며, 대학은 부당 사용 내용 발견 시 **자체점검** 후 재단에 **보고**

○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**저작권** 등 사업 관련 **유·무형 산출물**은 **대학**에 **귀속함을 원칙으로 함**

II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

비목	집행 불가 항목	비고
1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중복·이중지원 경비(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)	-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(강사료 및 교재 개발비 등) 지급 가능
2. 실험·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-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·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·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-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-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
3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	- 건물의 신축 투자, 토지 매입비	-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
4. 인건비	-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	- '19~'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신규채용된 경우는 지원가능 -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은 총 사업비의 5% 이내 집행 가능
5. 장학금	- 입학 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, 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-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	-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
6.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-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-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-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	-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·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, 도서구입비, 일반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·지급 가능